

국가보훈처 증장기계획수립 의무

국회입법조사처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

입법조사관 김예경

Tel. 788-4556/Fax. 788-4559

E-mail: ykmkim@nars.go.kr



요 약

질의 요지

국가보훈처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 관련 근거법률조항, 기존연구, 해외사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조사

(회답일 2016.11.29)

■ 조사·분석 방향

- 국가보훈처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관련 근거법률조항, 중장기계획수립의 필요성,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보훈처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여 회답함

■ 주 요 내 용

- 국가보훈처의 중장기계획수립의 의무는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8조를 근거로 함
- 국가보훈처의 중장기계획의 수립은 국가보훈정책의 추진성과와 현황을 점검하고, 장기적 발전 방향의 설정을 위해 필요하며, 보훈보상·복지, 국민 나라사랑정신 함양, 제대군인 지원 등 다양한 보훈영역을 총괄하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함
- 국가보훈처는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'장관급' 격상, 해외보훈주재관 파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
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목 차

1. 개요	1
2. 국가보훈처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관련 근거법률조항	1
3. 국가보훈처의 중장기계획수립의 필요성	1
4. 국가보훈처 차원에서의 중장기계획수립의 실효성 제고 방안	2
5. 해외사례	2



국회입법조사처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.
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요

- 보훈처의 중장기계획수립의 의무관련 근거법률조항, 중장기계획수립의 필요성,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국가보훈처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여 회답함

2. 국가보훈처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관련 근거법률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8조

제8조(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국가보훈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
가. 희생·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
나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(報償)에 관한 사항
다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
3. 국가보훈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4. 국가보훈 관련 국제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국가보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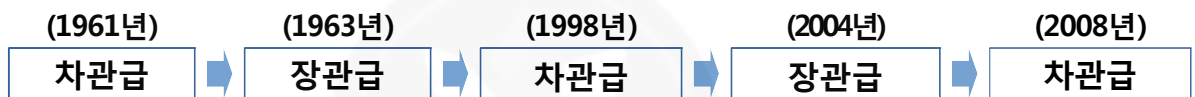
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1.8.4.]

3. 국가보훈처의 중장기계획수립의 필요성

- 국가보훈정책의 추진성과와 현황을 점검하고, 장기적 발전 방향의 설정 필요
 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근거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
 - ※ 전 부처 및 중앙·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
- 보훈보상·복지, 국민 나라사랑정신 함양, 제대군인 지원 등 다양한 보훈영역을 총괄하는 종합계획의 수립 필요

4. 국가보훈처 차원에서의 중장기계획수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

- 부처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'장관급' 격상 필요
 - 보훈업무 수행 시, 관련 부처(장관급)와의 직위에 차이가 있어 주관 부처로서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
 - 나라사랑교육 총괄: 국방부, 외교부, 통일부, 문화체육관광부, 교육부, 방송통신위원회 등 협조
 - 제대군인지원협의회: 국방부, 고용노동부, 교육부, 국민안전처 등 협조
 -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: 선출직 임기직인 지자체장과의 협조
 - ※ 처 창설 이후 위상의 격상(장관급)·격하(차관급) 반복



- 해외보훈주재관 파견 필요
 - 보훈주재관 부재로 해외현충시설 관리 및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에 애로
 - ※ 전체 163개 공관(318명) 중 보훈주재관 전무(보건복지 식약 9, 통일·안보 6)
 - 미국: 참전용사 현지 감사행사·후손지원 및 참전시설물 관리 필요
 - 중국: 독립운동유적 보존·관리를 위한 보훈 주재관 파견 필요

5. 해외 사례

- 국가보훈처에 해외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음